

【 23 】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7. 6. 9.

제출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종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중인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 및 운영조례 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내용으로 개정하고,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, 농공기술훈련소를 “양주군농업개발센타”로 그 명칭을 개정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를 “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”로, “농공기술훈련소”를 “양주군농업개발센타”로 개정함(안 제1조)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중 “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”를 “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”로 하고 “농공기술훈련소”를 “양주군농업개발센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농업기계화촉진법</u>	제1조(목적) ----- <u>농업기계화촉진법</u>
법 제3조 의 규정에의거 농기계의 효율	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-----
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을 제	-----
고를 위하여 <u>농공기술훈련소</u> 에 농기계	----- <u>양주군농업개발센타</u> -
수리센타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	-----
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	-----
적으로 한다	-----

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

[1973. 5. 28]
조례 제 360호

개정 1977. 2.12 조례 제 494호
 " 1980. 7.15 조례 제 694호
 " 1982. 4. 7 조례 제 801호
 " 1984. 2. 1 조례 제 978호
 " 1985. 9.30 조례 제 1071호
 " 1986. 3.12 조례 제 1110호
 " 1992. 7.27 조례 제 1426호

신설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을 제고를 위하여 농공기술훈련소에 농기계 수리센타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수리장비 및 시설)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.

제 3 조(기능) 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부속품대체, 정비,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.
 ② 농기계 수리는 읍·면·리·자연부락 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.
 ③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수리도 실시한다.
 ④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 한다.

제 4 조(관리) ① 농기계 수리센타의 관리 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한다.
 ② 농기계 수리센타 요원은 담당지도사, 농기계 교관 기계직 요원, 운전사로 편성한다.

제 5 조(부속품대 및 수수료) ① 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농기계 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 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
 ② 징수한 대금은 군 금고에 입금한다.
 ③ 징수한 부속품대는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 6 조(망실 또는 훼손) 장비 및 공구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어 있을 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8편 농촌지도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

제 7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1973. 5.28 조례 제 36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77. 2.12 조례 제 49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0. 7.15 조례 제 69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2. 4. 7 조례 제 80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4. 2. 1 조례 제 97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5. 9.30 조례 제 1071호)

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6. 3.12 조례 제 111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2. 7.27 조례 제 142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(^{1 9 9 5 · 5 · 1 2}_{대통령령제14645호전문개정})

개정 1996. 8. 8 대통령령제15135호(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)

제 1 조 (목적) 이 영은 농업기계화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생산후 처리작업의 범위) 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생산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·선별·분리·세척·살균·냉각·저장·포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·분쇄·도정·도축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.

제 3 조 (자금지원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·기술훈련·연구 및 보관관리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기계의 제조업자·사후봉사업자나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(당해 농업기계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 4 조 (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·고시)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농업기계중에서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한다. <개정 96·8·8>

②농림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·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96·8·8>

③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96·8·8>

제 5 조 (신기술농업기계의 지원등) ①법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에

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신기술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96·8·8>

제6조 (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) ①농림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 <개정 96·8·8>

②농림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96·8·8>

1. 지방자치단체
2. 정부투자기관
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, 보조금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
4.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

제7조 (안전장치의 구조)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에 부착하여야 할 안전장치의 구조는 별표와 같다.

제8조 (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) 농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자에 대한 실태확인에 관한 사무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96·8·8>

제9조 (청문절차)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·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·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과태료의 부과) ①농림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시장·군수

第24編 農業 第5章 農政 農業기계화촉진법시행령

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은 법 제1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96·8·8>

②부과권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④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96·8·8>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영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.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5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(이하 이 항에서 "법"이라 한다)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96·8·8>

1.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
2. 법 제10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,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
3. 법 제1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4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

부 칙 <96·8·8>

제 1 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내지 제 8 조 생략